

선도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경남도 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2018. 8

하민지

선도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경남도 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2018. 8

하민지

연구진 profile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구기획조정실 연구위원(자치분권연구팀장)◦지방자치·행정 및 정책 전공 |
| 하민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치와 분권형 개헌에 대비한 경남 지방분권 추진과제(경남발전연구원, 2018)◦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의의와 준비(경남발전연구원, 2018) 등 다수 |
-

요약 및 정책함의

-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
 -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강화,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 방식의 일환으로서 기능배분 추진
 - 중앙부처별 기능배분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추진
 - 기존 사무단위 이양이 아닌 패키지 이양이 가능한 기능 단위 방식 대응
- 정부간 관계에 있어 수직적 포괄형에서 상호의존적 중첩형 관계로의 전환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간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지방간 역할, 권한과 책임 등을 배분
 - 정부간 기능배분의 기준은 정치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가치판단의 문제
- 중앙-경남도 간 기능배분 위한 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
 - 기능배분 기준은 효율성, 지역적합성, 주민만족도, 정책효과성, 책임성, 형평성, 독자적 결정권 순으로 도출
 - 기준별 행정기능은 효율성 위한 기획기능, 지역적합성 위한 지원기능, 주민만족도 위한 기획기능, 정책효과성 위한 지원기능, 지역적합성 위한 관리기능 순으로 도출
- 미이양 사무 중 순위별 그룹화를 통한 1순위 해당 기능 도출
 - 1순위 그룹 내 해당기능은 고용노동부(11개), 환경부(10개)의 기능이 가장 많으며, 전체 16개 법률 개정 필요
 - 이양방향에 대해 원처리권자를 국가에서 국가 또는 시·도, 혹은 시·도로 규정사항 개정 필요
 -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행위 시정명령, 남녀고용평등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 및 시설 설치, 유해물질 관리, 안전보건 기능 등
 -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 국민환경보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교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가축분뇨 관리 이용 교육, 환경관리인 교육 기능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별 전부 혹은 일부 이관 방안 도출
 - 경남지방고용노동지청의 경우 고용정책과 근로자 복지 기능은 전부 이관, 노동정책 기능은 근로개선 지도업무 중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의 처리 등의 특별사법경찰업무 등 분야 특이성이 존재하므로 이관이 어려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경우 자금지원과 통상지원 기능은 전부 이관, 기업지원 기능의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 시험연구지원, 공공구매 위반사항 확인 등은 분야 특이성이 존재, 중복성이 낮기에 점진적 이관 고려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환경관리와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기능은 현지적합성, 기업체편의성 등 측면에서 전체 이관 가능, 분야 특이성이 존재하는 생태계 보전지역 등 관련 기능은 점진적 이관 필요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 해양보전 기능은 전부 이관 가능하며, 항만 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 기능은 무역항 관리의 경우 우선 이관이 가능하지만, 항로표지 설치·관리 등의 경우 전국적 통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이관이 어려움
- 중앙정부 차원의 기능배분 추진에 있어 일괄 vs 개별 이양 방식 고려
 - 각 부처별 상이한 기능 및 여건으로 인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에 기능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고려 필요
 - 각 부처별 이양여건 및 특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기능별 관계 부처 및 관계자, 전문가, 국민 등 협의체 구성
- 무조건적인 기획기능 우선 배분보다는 이양효과 및 선호 고려
 - 기획기능을 정책결정기능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이양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이양효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는 기능을 우선적 배분
- 기존 이양확정 사무 우선 배분 및 점진적 확대
 - 기존 이양확정된 사무들 중 각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수요가 높은 기능 우선 배분 추진
 - 각 부처별 기능에 관해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기능배분을 확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및 지자체 관련부서와의 연계를 추진해야 함

차 례

I.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2
II.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에 관한 논의	4
1. 기능배분의 이론적 논의	4
1) 중앙-지방간 관계	4
2) 중앙-지방간 기능배분	6
2. 기능배분의 추진현황에 관한 논의	11
1) 추진실적	11
2) 특징 및 한계	13
III. 중앙-경남도 간 기능배분 방안	14
1. 기능배분 기준	14
2. 중앙부처별 기능배분	16
1) 우선순위 그룹별 기능	16
2) 1순위 그룹 내 기능 및 대상사무	20
3.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35
1)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35
2) 기능이관 필요성 및 기준	36
3) 경상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방안	39

IV. 결론	50
1. 연구의 요약	50
2. 정책적 제언	52
참고문헌	53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중앙-지방간 기능배분
 - 각 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는 기능배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능배분 우선순위 발굴
 -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에 따른 경상남도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기능배분 추진 방식의 일환
 - 기존 사무이양 추진과 달리 기능 단위의 패키지 이양 등 적극적인 이양 추진을 모색하고 있음

2) 연구목적

- 경상남도 기능배분 위한 기준 및 기능 우선순위 도출
 - 기능배분을 위한 가치기준에 대한 논의와 조사를 통한 배분기준 도출
 - 기준 및 점수화에 따른 순위별 그룹화를 통해 우선적 배분기능 선정
 - 패키지 이양이 가능하도록 단위사무를 포함하는 기능별 제시
 - 기능배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 모색
- 경상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방안 도출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경남도청 관련부서의 기능에 대해 주요 기준에 따라 이관 적합여부 판단
 - 기능별 유지 혹은 이관(전부 이관, 일부 이관)여부 판단

2. 연구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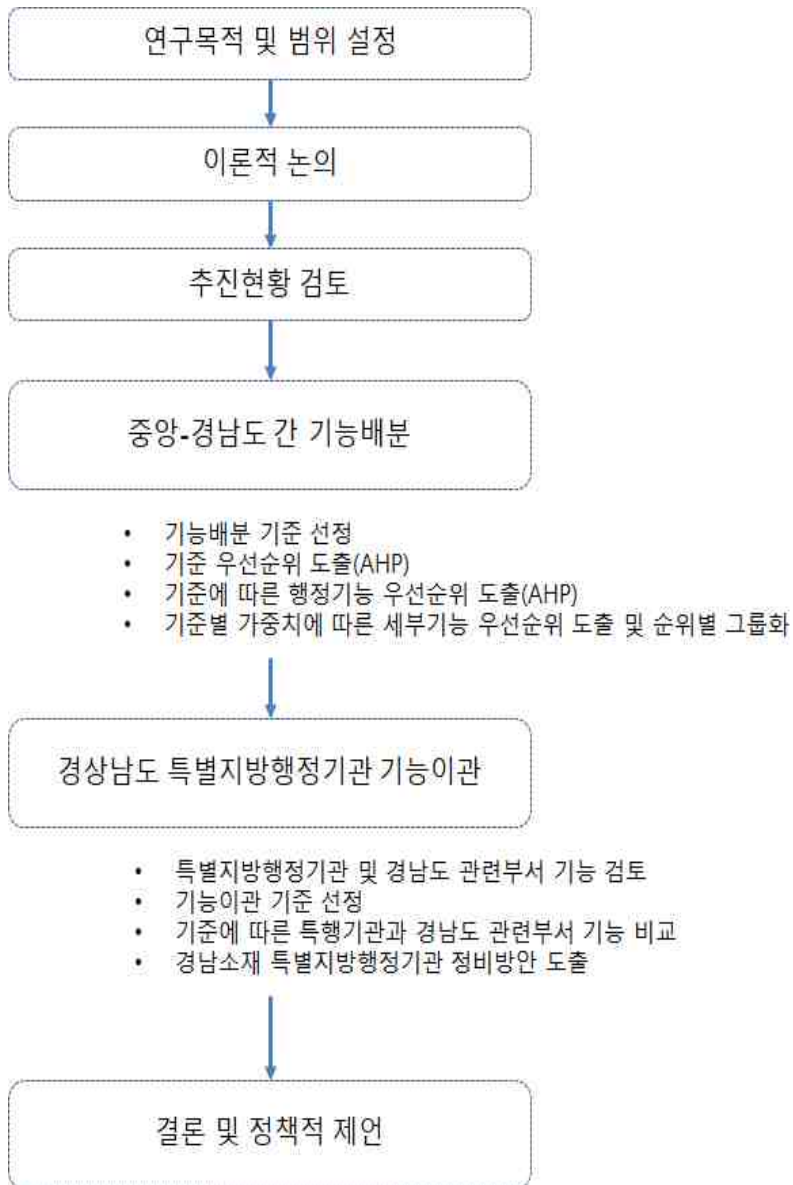
1) 연구범위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
 - 지방사무 이양확정 및 완료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계 제공하고 있는 2012년 기준 자료 내 미이양사무 1,119건 중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각 부처별 기능과 단위사무를 대상으로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 경상남도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고용노동지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해양수산청을 대상으로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및 법률 등 관련자료 검토
 - 추진현황 등 통계자료 분석
- 전문가 조사
 - 지방자치, 행정, 분권 및 지역전문가, 경남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배분 기준 및 행정기능 우선순위와 세부기능별 순위(점수) 조사
 - 기능배분 기준 및 그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정책대안 우선순위(AHP)¹⁾ 분석을 수행
 - 기준별 가중치 및 세부기능별 점수에 따른 우선순위 도출 및 그룹화
 - 조사대상: 전문가 및 공무원 총 21명(중앙부처 관련 위원회(2명), 대학(1명), 정부출연(10명) 및 민간연구기관 전문가들(1명)과 경남도 공무원(경제, 농업, 복지, 도시, 문화, 행정, 환경)(7명))
 - 조사기간: 2018년 4월 10일~ 4월 23일

1)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정책대안들이 다수의 목표 혹은 속성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 평가하여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정책대안을 두 개씩 짝 지운 쌍대 비교를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함. ① 속성과 대안의 계층구조와 쌍대 비교 행렬 구성, ② 속성별 가중치 계산 ③ 일관성 검증 실시 후 AHP 타당성 판단 ④ 대안의 속성별 선호도 합산을 통해 최적의 대안 선택(키노시타 에이조 외, 2012).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II.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에 관한 논의

1. 기능배분의 이론적 논의

1) 중앙-지방간 관계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 국가 내 모든 형태의 정부단위나 수준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활동의 총체
 - 중앙, 광역, 기초정부 사이에 발생하는 정책적 상호관계 및 총체적 활동
- 정부의 사무,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담당하고 수행하는 활동
 -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결정과 집행으로 기능 및 사무배분을 포함

(2) 정부간 관계의 모형

① 라이트(Deil Wright) 모형²⁾: 포괄, 중첩, 대등 관계모형

- 포괄권위형(inclusive-authority model)
 - 중앙정부에 지방정부가 완전히 종속적임. 지방은 중앙의 지시와 감독을 강하게 받음.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이며, 자치사무의 비중이 매우 적어 자치권은 크게 제한
- 중첩권위형(overlapping-authority model)
 - 계층별 정부가 상호 독자적인 권한과 평등적 지위를 갖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비중이 커서 상호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협력
- 대등권위형(coordinate-authority model)
 - 정부간 관계는 서로 대등하고, 독립적임. 지방자치권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축소될 수 없음. 지방사무는 자치사무가 대부분이며, 인사와 재정 등이 중앙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크게 없음

2) 김운식(2007).

② 무라마쓰 미치오 모형³⁾: 수직적 행정통제, 수평적 정치경쟁모형

○ 수직적 행정통제모형

- 중앙정부가 권력적 수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를 통제, 지방정부는 이에 복종하는 상하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

○ 수평적 정치경쟁모형

-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 관계를 유지, 지방정부는 정책실험을 통해 성공한 정책을 중앙정부에 요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상호의존적 관계

③ 엘코크(Elcok) 모형⁴⁾: 대리인, 동반자, 상호의존모형

○ 대리인 모형(agent model)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

○ 동반자 모형(partnership model)

- 중앙과 지방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상호협력,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보유

○ 상호의존모형(exchange model)

- 중앙과 지방은 상호간에 권한과 재정, 정보 등 자원을 서로 교환하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

④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 적용 적합한 모형

○ 과거 중앙정부가 각종 권력적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 지방은 중앙의 지시와 감독을 강하게 받는, 수직적 포괄모형에 해당

○ 최근 지방자치제의 발전으로 자치의식 신장,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 등 상호의존적인 중첩형으로 변화하는 추세

- 지역행정과 운용의 주체로서 부상하여 수동적 위치에서 탈피,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위주체로 거듭

3) 김명주(2018).

4) 강용기(2004).

2) 중앙-지방간 기능배분

(1) 기능배분의 의의⁵⁾

- 일반적으로 중앙-지방 정부 사이에 기능 및 권한을 분산하는 것
 - 정부간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여러 종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역할과 권능을 배분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의 증가로 중앙 차원에서 서비스 및 규제관리, 지역주민의 후생복지 증진 등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결정 및 집행이 적합, 지방자치의 실현 요구
 - 정부 간 기능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갈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에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중요
- 기능배분 기준은 정치경제적 의미를 가짐. 즉,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가치와 판단의 문제로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부족
 - 당해 기관의 존립 근거를 결정하고 부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힘의 관계나 사회 전체의 정치경제구조에 의해 배분

(2) 기능배분의 방식에 관한 논의⁶⁾

□ 개별적 지정 방식

- 광역, 기초자치단체별로 사무의 종목을 지정하여 사무를 배분하는 방식, 영미법계에서 채택
 -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의 책임 한계가 명확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 가능
 - 개별 법률의 양산으로 행정상 업무 부담, 중앙 차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자체별 사무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 포괄적 위임 방식

- 모든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사무를 배분하는 방식,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의 국가에서 채택
 - 배분방식이 간단하고 간편하고,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가짐

5) 고경훈(2018); 정희동(2003); 김병준(2010).

6) 최창호 외(2016); 김명주(2018).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행정주체간 혼동 야기, 각종 특별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자치사무에 대해 쉽게 관여 가능

□ 절충적 방식

- 개별적 방식과 포괄적 방식을 절충하여,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사무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각각의 개별법에서 광역, 기초자치단체별로 일부 중요한 사무를 예시해주는 예시적 포괄배분 방식
- 우리나라 활용방식,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

(3) 기능배분의 원칙에 관한 논의⁷⁾

① 헌법상 배분원칙

□ 전권한성의 원리

-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전권한성을 보장(「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나 법률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무로 유보하지 않는 한 모든 지역의 공공사무에 대해 포괄적 자치권을 가짐

□ 보충성의 원리

-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이며, 광역자치단체, 국가 순으로 공공사무의 외연을 확장하여 배분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데 그쳐야 하고, 지자체의 기능을 국가의 기능으로 흡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② 지방자치법상 배분원칙

□ 사무범위 및 배분에 관한 기본조항

-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이라는 표제로 관련 내용을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판단(「지방자치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 시 주민편의와 복리의 원칙, 법령적합의 원칙, 행정능률의 원칙 등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함

7) 한국행정학회(2018); 김명주(2018).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 국가 사무의 처리제한에 관해 차례로 규정(동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 포괄적 수권방식을 채택하고 있음(동법 제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6개 분야 57개의 세부 내용으로 예시하고 있음. 다만 단서에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국가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동법 제9조 제2항)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기준에 관하여 규정(동법 제10조)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열거, 국가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동법 제11조)

□ 현지성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동법 제9조)
 - 이는 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 또는 현지에서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불경합의 원칙과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시·도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가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사무로서, 이 기준의 해당사무는 법령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사무에서 제외시키고, 시·도에 귀속하도록 할 수 있음
 - ①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 국가사무의 구분 기준

-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 그 외의

사무는 국가사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 즉 국가사무로 유지해야 하는 사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1조)

- ①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⑥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임

③ 지방분권법⁸⁾상 배분원칙

행정기능 중복배제의 원칙(비중복성의 원칙)

- 행정사무의 배분에서 행정의 기능적 부분을 고려하여 동일 성질의 기능이 총체적으로 배분, 동시에 중복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함(「지방분권법」 제9조 제1항)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보충성의 원칙)

- 사무를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사무를 주민과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 많이 배분해야 함(동법 제9조 제2항)

포괄적 사무배분의 원칙(포괄성의 원칙)

-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과 결부될 수 있는데, 사무를 배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결정과 행정책임 하에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사무를 배분하는 것임(동법 제9조 제3항)

참여의 원칙

-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행정참여기회 확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임(동법 제9조 제4항)

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이라고 함).

④ 일반원칙⁹⁾

효율성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능력, 자원과 관련하여, 사업과 정책 비용 대비 편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능력과 기능과의 균형을 통해 일정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적합성

- 지역적 특수성과 동일한 의미로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하지만,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큰 기능, 지역특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 생활상 필요한 기능, 공공부문에서 먼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기능을 우선 이양해야 함을 의미

주민만족도

-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 대면 접촉적이며, 기초적인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
- 주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행정서비스이기에 이에 대한 만족수준이 바로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중요한 의미

정책효과성

- 효과성(outcome)은 파급효과 일체를 파악하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율성(output)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임
- 공공서비스는 정책과 서비스의 집행 후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효과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에 이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책임성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사무를 서로 경합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소속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사무의 원처리권자로 지정되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책임성이 명확해졌는지에 관한 원칙

9) 고경훈(2017); 안영훈(2006).

□ 독자적 결정권

- 기준, 인허가 등과 관련한 사무 중 독자적인 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들에 있어 중요

⑤ 배분기준¹⁰⁾

□ 영향의 범위, 사무의 성격, 사무수행 효율, 사무수행 능력

- 영향의 범위: 배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
 -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국적 계획 수립에 의한 선정이 필요한가
 - 사무수행에 따른 결과 또는 파급효과가 전국에 미치는가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한가
 - 전국적 규모의 추진 사업 또는 수급이 필요한가
- 사무의 성격: 정책결정적 사무, 정책집행적 사무
 - 기준 설정의 성격을 가지는 지,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집행의 성격
 - 사무처리에 있어서 제3자적 공정성이 요구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이 요구되는가
- 사무수행 효율: 국가 전체 측면에서 일정한 사무를 어느 계층, 정부단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 주민편의, 비용 절감, 능률성 제고, 행정 편의
- 사무수행능력: 특정한 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계층, 정부단위에서 처리
 - 지방공무원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소요 경비를 충당할 자원, 기기, 통신수단 등 장비

2. 기능배분의 추진현황에 관한 논의

1) 추진실적¹¹⁾

(1) 지방이양합동심의회

- 1991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총무처에 설치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10) 최창호 외(2016).

11) 최근열(2016).

1998년까지 8년간 3,701개의 지방이양사무를 심의, 이 중 2,008건 이양 확정, 이 중 1,639건을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양완료(82%)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0년 이후 2012년 12월말까지 이양확정 사무가 3,101개, 이 중 63.9%인 1,982개 사무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이양완료
 - 1,119개 사무는 해당 부처에서 입법 추진 중
 - 역대정부별로 보면 이양확정사무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1,587개 사무로 김대중 정부(612개)와 노무현 정부(902개)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나 그 중 법령개정을 통해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노무현 정부가 856개(94.9%) 사무로 김대중 정부 610개(99.7%), 이명박 정부 516개(32.5%)보다 많음

(표 2-1) 역대 정부별 지방사무이양 추진실적 (2012년 12월말 기준)

구분	총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소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00	01	02	03	04	05	06	07	소계	08	09	10	11	12	
이양확정	3,101	1,514	185	176	251	478	53	203	80	88	1,587	54	697	481	277	78	
이양완료	1,982	1,466	185	175	250	466	53	191	68	78	516	45	336	110	23	2	
		1,219	2	92	138	172	204	436	44	131	763	118	81	135	232	197	
추진중	1,119	48	-	1	1	12	-	12	12	10	1,071	9	361	371	254	76	

자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2; 최근열, 2016에서 재인용

(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1,801건 사무 발굴, 지방일괄이양법의 단계적 제정 추진(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7)
 - (1단계) 기존 미 이양사무에 대한 일괄법제화 추진
 - (2단계) 국가총사무 재배분 완료 사무에 대한 일괄 법제화 추진
 - (3단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 일괄법제화 추진

2) 특징 및 한계¹²⁾

- 지방사무이양 전담기구가 자문기구에 불과해 각 중앙부처에 사무이양을 강제할 권한이 없었음
- 단위사무 위주의 이양만으로 이양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고 행정적·재정적 자원의 이양이 함께 이루어지기 어려웠음
- 주민과 접점기능의 성격을 지닌 과제들의 이양실적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성과와 체감도가 낮은 편이었음
- 사무이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관련 중앙부처들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편이었음
- 일률적으로 사무이양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음

12) 이해영(2014); 박종관 외(2014); 조성호 외(2012).

Ⅲ. 중앙-경남도 간 기능배분 방안

1. 기능배분 기준

- 중앙-경남도 간 기능배분을 위한 7가지 가치 기준
 - 앞서 제시한 논의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기능배분을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기준을 선정함. 이는 지역적합성, 효율성, 정책효과성, 주민만족도, 형평성, 독자적 결정권, 책임성 기준임

(표 3-1) 경상남도-중앙간 기능배분 기준

기준	내용
지역적합성	해당 기능은 지역적 영향범위에 적합하며, 지역 특색을 잘 살릴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
효율성	지방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시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
정책효과성	지방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시 효과가 빠르고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
주민만족도	지방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시 주민 대응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
형평성	지방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시 형평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
독자적 결정권	지방의 독자적 결정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기능
책임성	지방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시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한 기능

- 기능배분 7가지 기준 우선순위
 - 전문가 조사 및 AHP 분석을 수행한 결과, 1순위로 효율성이 도출되었고, 다음으로 지역적합성, 주민만족도, 정책효과성, 책임성, 형평성, 독자적 결정권 순으로 도출되었음

(표 3-2) 기능배분 기준 우선순위

구분(기준/가중치)	상대적 중요도	순위
지역적합성	0.179	2
효율성	0.194	1
정책효과성	0.149	4
주민만족도	0.171	3
형평성	0.102	6
독자적 결정권	0.097	7
책임성	0.107	5

주) CR¹³⁾: 0.05.

기능배분 기준에 따른 행정기능 우선순위

- 기능배분을 위한 7가지 기준에 따른 행정기능(기획, 지원, 관리기능) 우선 순위는 1순위로 효율성 위한 기획기능, 2순위로 지역적합성 위한 지원기능, 3순위로 주민만족도 위한 기획기능, 4순위로 정책효과성 위한 지원기능, 5순위로 지역적합성 위한 관리기능 순으로 도출됨

(표 3-3) 기능배분 기준에 따른 행정기능 우선순위

구분(기준/가중치)	상대적 중요도	순위
효율성 위한 기획기능	0.179	1
지역적합성 위한 지원기능	0.173	2
주민만족도 위한 기획기능	0.170	3
정책효과성 위한 지원기능	0.161	4
지역적합성 위한 관리기능	0.154	5

주) CR : 0.04.

기능배분 시 추가 고려사항

- 지역단위 사무, 주민접점 현장사무, 집행사무 등 해당여부 판단
 - 지역단위 사무: 지역여건 고려 및 현지수급 가능여부
 - 주민접점 현장사무: 주민선호, 욕구 조사 및 반영 필요
- 기획기능 vs 집행기능 중 지방 선호 기능 우선적 고려

13) CR은 응답자들의 답변들의 일관성 비율로 0.1-0.2에 해당하는 경우 좋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분석결과는 일관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기획기능(승인·허가, 지정, 권한·계획) vs 집행기능(명령·감독, 등록·신고, 검사·조사, 고시·공고, 처리·단속)
- 승인, 지정 등 기획기능: 실질적 권한 행사 가능토록 재정적 지원 필요

2. 중앙부처별 기능배분

1) 우선순위 그룹별 기능¹⁴⁾

(1) 1순위 그룹 기능

- 고용노동부(11개), 국토교통부(1개), 해양수산부(2개), 기획재정부(1개), 농림축산식품부(3개), 보건복지부(2개), 중소벤처기업부(2개), 과학기술통신부(1개), 산업통상자원부(1개), 환경부(10개) 기능이 해당

(표 3-4) 1순위 그룹 부처별 해당 기능

부처	해당 기능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의 자격등록 등 기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기능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기능
	고용상 연령차별행위 시정명령 등 기능
	남녀고용평등 관련 상담지원기능
	작업환경 측정 대행 등 기능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등 기능
	남녀고용평등 지원 기능
	유해물질 제조허가 기능
	유해인자 관리 기능
	안전 보건 기능
국토교통부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등 기능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능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의 심사 등 기능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지원기능

14) 미이양된 사무 1,119건 관련 기능을 대상으로 하여 앞서 도출한 각 배분기준별 가중치와 세부기능별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곱한 값으로 총 순위를 도출하고 그룹화함(상위 33%, 66%, 나머지 순).

(표 3-4) 1순위 그룹 부처별 해당 기능(계속)

부처	해당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초지조성 국공유지의 대부료책정 기능
	사료의 수급안정 기능
	농지전용허가협의 기능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련품질검사에 관한 기능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기능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활동 촉진 기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기능
과학기술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기능
환경부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기능
	비점오염원 관리 기능
	국민환경보건 등 기능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기능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기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 기능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기능
	야생화원 동물의 지정 등 기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등의 교육 기능
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기능	

(2) 2순위 그룹 기능

- 고용노동부(4개), 국토교통부(7개), 기획재정부(1개), 농림축산식품부(2개), 문화체육관광부(2개), 보건복지부(4개), 중소벤처기업부(3개), 산업통상자원부(1개), 행정안전부(3개), 환경부(7개) 기능이 해당

(표 3-5) 2순위 그룹 부처별 해당 기능

부처	해당 기능
고용노동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기능
	직업소개사업 등 기능
	사업주의 감독 기능
	산업재해감독 기능

(표 3-5) 2순위 그룹 부처별 해당 기능(계속)

부처	해당 기능
국토교통부	물류인력의 양성 기능
	건설기술자의신고등기능
	자동차 운행 제한 등 기능
	지구단위계획 지정 기능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기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경영의 합리화 기능
기획재정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기능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이의신청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의 방역 등 기능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 기능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등 기능
보건복지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기능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적 관리 등을 위한 기능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기능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기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기능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환경조성 기능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등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기능
행정안전부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기능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청문 기능
	승강기 안전관리 기능
환경부	공공하수도 설치 등 기능
	재활용센터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기능
	낙동강수계 물관리기능
	토양환경 관련 기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기능
	방지사설업사후관리 및 과태료 징수 기능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지 명령 등 기능	

(3) 3순위 그룹 기능

- 고용노동부(5개), 국토교통부(16개), 해양수산부(2개), 농림축산식품부(2개), 문화체육관광부(3개), 보건복지부(4개), 중소벤처기업부(1개), 산업통상자원부(1개), 환경부(2개) 기능이 해당

(표 3-6) 3순위 그룹 부처별 해당 기능

부처	해당 기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발급 기능
	지도사의 등록 기능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기능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능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국토교통부	물류공동화 확산 관련 기능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기능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 관련 기능
	종합발전구역의 계획수립에 관한 기초조사 등 기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기능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등 기능
	개량건널목의 지정 등 기능
	영업장 폐쇄조치 등 기능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기능
	광역계획권의 지정변경 협의 기능
	도선료의 사전신고 등에 관한 기능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의 지정 등 기능
	운수종사자 교육 기능
	주택건설공제사업및협회설립인가등기능
도시재정비촉진 지구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기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감독기능	
해양수산부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기능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관련 기능

(표 3-6) 3순위 그룹 부처별 해당 기능(계속)

부처	해당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대량폐사시 수산동물 방역관 위촉 기능
	원유검사에 관한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기능
	정기간행물 폐업 및 직권말소 등 기능
	지방문화원의 설립 인가 등 기능
보건복지부	식품안전 관련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기능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기능
	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에 관한 기능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기능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 채무보장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생산기술의이전확산을위한)자금지원기능
환경부	가축분뇨관리 관련 보고 검사 등 기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기능

2) 1순위 그룹 내 기능 및 대상사무¹⁵⁾

(1) 국토교통부

-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등 기능
-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관리 사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국가, 시도

(표 3-7)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등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100만제곱미터이상)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 법률	제22조 국토교통부장관
물류단지의 관리(100만제곱미터이상)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 법률	제53조 물류단지지정권자

15) 1순위 그룹에 해당하는 총 34개 기능에 대해 이양대상 사무와 이양방향과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 등을 제시.

(2) 고용노동부

- 고용상 연령차별행위 시정명령 등 기능
 - 시정명령, 시정명령이행상황의 제출요구, 과태료 사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8) 고용상 연령차별행위 시정명령 등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시정명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7	고용노동부장관
시정명령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8	고용노동부장관
과태료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	고용노동부장관

-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등 기능
 -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사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9)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 등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1조	고용노동부장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1조의2	고용노동부장관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1조의3	고용노동부장관

- 공인노무사의 자격등록 등 기능
 -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등록취소, 과태료 사무
 - 공인노무사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10)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법명	조항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공인노무사법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
등록의 취소	공인노무사법	제19조	고용노동부장관
과태료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고용노동부장관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기능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등 사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11)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법명	조항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고용노동부장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	고용노동부장관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기능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교사의 양성, 자격취소 등 사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1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법명	조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	고용노동부장관

(표 3-1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기능 내 단위사무(계속)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자격취소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5조	고용노동부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6조	고용노동부장관

작업환경 측정 대행 등 기능

- 작업환경 측정대행, 대행자의 지정 취소 등 사무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13) 작업환경 측정 대행 등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작업환경측정대행(작업환경측정대행자를지정하여작업환경을측정할수있음)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조	고용노동부장관
측정대행자의 지정취소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조의2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 관련 상담지원기능

- 상담지원 사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국가, 시도

(표 3-14) 남녀고용평등 관련 상담지원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상담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23조	고용노동부장관

□ 남녀고용평등 지원 기능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 사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15) 남녀고용평등 지원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법명	조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의3	고용노동부장관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의4	고용노동부장관
과태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39조	고용노동부장관

□ 유해물질 제조허가 기능

- 제조 등의 금지, 허가 사무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16) 유해물질 제조허가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법명	조항	
제조 등의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고용노동부장관
제조 등의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고용노동부장관

□ 유해인자 관리 기능

- 유해인자 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사무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17) 유해인자 관리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유해인자의 관리 등 기능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 보건 기능

- 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첩, 안전·보건 진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안전보건개선계획 사무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18) 안전 보건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역학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고용노동부장관
건강관리수첩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고용노동부장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개선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고용노동부장관

(3) 기획재정부

□ 경제교육지원기능

-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운영 사무
 - 경제교육지원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국가, 시도

(표 3-19) 경제 교육지원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경제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경제 교육지원법	제8조	기획재정부장관
지역경제 교육센터의 지정·운영	경제 교육지원법	제9조	기획재정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조성 국공유지의 대부료책정 기능
 - 초지조성 허가 받은 국공유지 대부료 책정 사무
 - 초지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대통령령) → 시도(시도조례)

(표 3-20) 초지조성 국공유지 대부료책정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국공유지의 대부료 책정 *국공유지 중 공유지만 이양(국유지제외)	초지법	제1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료의 수급안정기능
 - 사료의 수입추천 등 사무
 - 사료관리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국가, 시도

(표 3-21) 사료의 수급안정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사료의 수입추천 등	사료관리법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지전용허가협의 기능
 -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우) 농지 전용허가 협의 사무
 - 농지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3만~20만㎡미만시도위임) → 국가, 시도

(표 3-22) 농지전용허가협의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농지법	제3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보건복지부

-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기능
 -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위탁 사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23)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위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6)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기능
 -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 등록 사무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한국석유관리원 위탁수행) → 시도

(표 3-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제28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제2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과학기술통신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기능
 - 소프트웨어사업자, 기술자의 신고, 공제조합 설립, 기본재산 조성 사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국가, 시도

(표 3-2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과학기술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	과학기술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	과학기술통신부장관
기본재산의 조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9조	과학기술통신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 활동 촉진 기능
 - 벤처기업 정보제공, 보고 등 사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26) 벤처기업 활동 촉진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4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보고 등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기능
 -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취소, 이행실적조사, 변경 및 중단, 보고 및 검
사 사무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2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관한특별법	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관한특별법	제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관한특별법	제10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관한특별법	제11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업전환계획 승인 취소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보고 및 검사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관한특별법	제32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9) 해양수산부

□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의 심사 등 기능

○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심사, 부담금 부과·징수, 부담금과 가산금 강제 징수, 부담금 증명 표지 사무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시도위임) → 국가, 시도

(표 3-28)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심사 등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조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의 심사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
부담금의 부과·징수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해양수산부장관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강제징수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해양수산부장관
부담금 증명 표지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능

- 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확인,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접수, 사업승계 신고접수, 자료제출 명령, 취수중단명령, 면허취소, 사업개시일과 휴업기간의 연장,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지정,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부과징수 사무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시설에 출입, 검사, 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 사무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시도 → 시도

(표 3-2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 접수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
사업승계 신고의 접수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해양수산부장관
자료제출의 명령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
취수중단명령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그 사업 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의 연장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시설에 출입, 검사, 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표 3-2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 기능 내 단위사무(계속)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지정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해양수산부장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부과징수	해양심층수의개발 및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해양수산부장관

(10) 환경부

-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기능
 -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결격사유, 취소, 청문 등 사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30)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업무는 국토부, 법률은 환경부)	건설폐기물의재활 용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국토교통부장관
품질인증의 결격사유(업무는 국토부, 법률은 환경부)	건설폐기물의재활 용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의2	국토교통부장관
품질인증의 취소 등(업무는 국토부, 법률은 환경부)	건설폐기물의재활 용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	국토교통부장관
청문(업무는 국토부, 법률은 환경부)	건설폐기물의재활 용촉진에관한법률	제57조	국토교통부장관

- 비점오염원 관리 기능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준수사항, 개선명령 사무
 - 물환경보전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 관리지역 지정,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사무
 - 물환경보전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국가, 시도

(표 3-31) 비점오염원 관리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법명	조항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 개선명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53조	환경부장관
관리지역의 지정 등	물환경보전법	제54조	환경부장관
관리대책의 수립	물환경보전법	제55조	환경부장관
시행계획 수립	물환경보전법	제56조	환경부장관

- 국민환경보건 등 기능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조사결과 조치 및 시행조치 사무
 - 환경보전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국가, 시도

(표 3-32) 국민환경보건 등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법명	조항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및 시행요청	환경보건법	제16조	환경부장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기능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교육 사무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33)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법명	조항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환경부장관

-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기능
 -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사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시도 → 시도

(표 3-34)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4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등 기능
 - 산업단지조성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기금 조성 사무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3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등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환경부장관
주민지원기금의조성(국가 사무 제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에관한법률	제21 조 (제1항, 제3항)	환경부장관

-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기능
 -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취소, 보고,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36)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전기·전자제품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환경부장관

(표 3-)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기능 내 단위사무(계속)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등록취소 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환경부장관
보고와 검사 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환경부장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6조	환경부장관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등 기능

○ 수렵강습기관 지정 사무

-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 시도

(표 3-37)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등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등의 교육 기능

○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 보고 사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양방향: 국가,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

(표 3-3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등의 교육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실적의 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환경부장관

- 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기능
 - 대기환경관리인, 소음 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개정
 - 이양방향: 국가, 시도 → 시도, 시군구

(표 3-39) 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기능 내 단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대기환경관리인등의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소음 진동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소음진동규제법	제46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3.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1)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1) 개념 및 설치기준

-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

(2) 설치 현황

- 2000년에는 7,000여 개에 달하였으나 2005년에는 3,668개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 5,150개, 2017에는 5,196개 설치

(표 3-40)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현황

구분	해당기관	연도별 설치현황				
		2000	2005	2010	2015	2017
고용행정 기관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지청/출장소 등	46	46	47	47	47

(표 3-40)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현황(계속)

구분	해당기관	연도별 설치현황				
		2000	2005	2010	2015	2017
세무 행정기관	지방국세청, 세관, 세무서, 세관감시소 등	174	177	183	193	195
공안 행정기관	지방교정청, 고등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3,902	1,620	2,548	2,641	2,686
현업 행정기관	지방우정청, 우체국, 우편집중국, 우편물류센터 등	2,502	1,432	1,995	1,967	1,958
기타 행정기관	지방보훈청, 지방조달청, 지방병무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362	393	342	302	310
계	-	7,004	3,668	5,115	5,150	5,196

자료) 강영주(2017)와 행정안전부 현황자료를 종합하여 수정.

2) 기능이관 필요성 및 기준

(1) 필요성¹⁶⁾

① 구조적 측면

□ 기능 중복성

- 특별지방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전문성이 높은 기능, 사무 등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음. 그렇지만 실제 거의 규제나 집행사무를 관장함으로써 지자체의 사무와 중복적으로 수행

□ 중앙정부의 집권화 강화

- 특별지방행기관은 구조적으로 중앙의 기능을 확대하고, 운영적으로 중앙의 감독에 의존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집권화 경향

□ 비민주적 의사결정

- 특별지방행기관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으로 설치, 행정 관료에 의한 운영과 해당 주무부처의 업무책임으로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과 이익집단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됨

16) 금창호 외(2012).

② 운영적 측면

□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원적인 체계, 중복적인 인력 및 재원 투자, 민원인의 불편 등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유발

-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는 기능적 측면에서 사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주무부처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권한관계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갈등 발생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성 저해

- 각 중앙의 주무부처들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지방행정은 완전성과 종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연관 업무 상호 간의 유기적인 수행이 곤란함

(3) 이관 추진현황¹⁷⁾

□ 노무현 정부

-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을 도입하였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관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음
- 노무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노동, 식의약·안전, 환경, 국토건설, 해운·항만 등 9개 분야에 대한 이관을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일괄적으로 이양¹⁸⁾

□ 이명박 정부

- 식·의약품, 국도·하천, 해양·항만 3개 분야에서 인·허가, 시설관리, 지도·단속 등 일부 집행적 기능을 이관
- 중앙이 정책적·광역적 기능 수행, 지방은 현지성 높은 집행 기능 수행

17) 조성호(2018).

18)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자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제주도에 이관함.

- (1단계) 식·의약품, 국도·하천, 해양·항만 등 3개 분야와 관련된 11개의 법과 시행령 15개를 개정, 기능이관하고, 인력 208명을 지방직으로 전환
- (2단계)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12년 11월 고용, 중소기업, 환경 분야 단위 사무 중 일부만 지방이관

□ 박근혜 정부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중복 사무, 현지성이 강한 사무, 집행적 사무들은 이관을 추진, 이양이 결정된 사무에 대해 일괄 법제화를 추진하였음
- 특별행정기관 정비 TF를 설치하여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여,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

□ 문재인 정부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관수요조사를 통해 선도사업을 추진, 성공사례 도출 후 전국적 확산 방안 고려중
- 중복수행 사무, 집행적 사무, 지역적 사무의 우선 이양 검토

(4) 이관 기준

- 금창호 외(2012)와 주재복 외(2017)는 이관 기능의 판단 기준으로 기능 중복성, 이관 적합성, 분야 특이성의 3가지를 꼽을 수 있음¹⁹⁾
- 3개의 판단기준에서 기능 중복성과 이관 적합성은 이관가능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분야 특이성은 이관의 어려움 판단기준으로 활용함
- 기능 중복성: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기능
- 중앙과 지방의 동일한 사무
- 이관 적합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보다 적합한 기능
- 파급효과가 전국적이지 않은 사무
-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요구되는 사무
- 지역 적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로 수행 가능한 사무

19) 금창호 외(2012); 주재복 외(2016).

-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경우 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무
- 분야 특이성: 행정 효율성 이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별 존립가치에 해당되는 기능
 - 업무특성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내 존치가 요구되는 사무
 - 수요특성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내 존치가 요구되는 사무
- 조성호 외(2012)는 기능이관 분석의 기준으로 사무의 연계성, 집행성, 중복성으로 선정하였음²⁰⁾
 - 사무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 업무와의 연계가능성
 - 사무의 집행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가능성
 - 사무의 중복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복 정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남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경남도청 관련부서와의 기능 및 사무에 대해 기능 중복성, 이관 적합성, 집행성, 연계성, 분야 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하고, 기능이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관여부(현행유지 vs 이관), 이관범위(전체 vs 일부), 이관순위(우선 vs 점진)

3) 경상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방안²¹⁾

(1) 지방고용노동지청

① 경남도 내 지방고용노동지청

주요 기능²²⁾

- 근로감독: 근로감독, 노사지원 및 협력, 산업안전, 고용평등
- 고용지원: 고용안정(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중기능²³⁾

- 고용정책, 노동정책, 근로자 복지로 구분

20) 조성호 외(2012).

21) 경남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보훈지청과 산림청의 경우 수행기능이 대상집단의 인식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우선 이관대상에서 제외함.

22) 행정안전부(2008)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 내 구분에 따른 분류.

23) 지방자치단체 BRM 기준에 따른 구분으로 주재복 외(2016)의 연구에 따름.

(표 3-41)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중기능 및 주요 사무

중기능	소기능(주요 사무)
고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업무 • 지역 일자리공시제 업무 • 고용형태공시제 관련 업무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고령자인재은행 포함) •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 대량고용변동 신고 관련 업무 • 외국인 고용관리 업무 • 허위구인광고 지도 및 단속 •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직 확인 •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 직업진로지도 업무 • 집단상담프로그램(성취),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 청년 창직인턴제,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 민간 위탁사업 관련 업무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관련 업무, 장년취업인턴제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 취업알선, 구인·구직 관련 업무 • 워크넷상 구인·구직 개척 및 상설채용관(채용지원서비스) 운영 • 구직급여 지급 및 착오지급액 환수 업무 • 수급자 재취업지원 관련 업무, 조기재취업수당지급 업무 •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업무 • 고용안정사업(각종 지원금 지급) •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재직자, 실업자) 업무 • 계좌제(실업자)카드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카드 발급 등
노동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처리 • 사업장 근로감독 • 노동행정종합지원서비스 • 노사협의회 운영 • 체불임금청산 업무 •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 복지기금 관련 업무 • 퇴직연금, 퇴직공제 관련 업무 등 •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 및 관련 신고사건 처리

(표 3-41)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중기능 및 주요 사무(계속)

중기능	소기능(주요 사무)
노동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T/F 운영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지도 •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 양보교섭, 노사협력선언 업무 등 •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처리 • 장애인, 고령자 고용 지도 • 여성고용, 적극적 고용개선 및 직장보육시설 관련업무 •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 관련 업무 • 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관련 업무 •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지도 • 산재 취약계층 관리 및 산재 은폐 조사 • 위험기계기구 및 보호구 등 관련 업무 • 건설재해 예방 • 유해 화학물질 관련 지도 • 산업보건 관련 업무 등

자료) 주재복 외(2016)에서 인용·수정.

② 경남도청 관련 부서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 일자리개선
- 기업지원과: 기업환경개선, 노사협력

정비방안

- 고용정책 기능의 경우 전체 이관 추진
 - 우선적 이관: 취업지원, 구인구직 정보, 직업진로, 지역고용사업, 사회적 기업, 외국인 고용관리, 직업능력 개발
 - 점진적 이관: 연계성과 중복성이 낮은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및 고용 보험부정수급 등, 모성보호사업
- 노동정책 기능의 경우 일부 이관 추진
 - 현행 유지: 분야 특이성이 존재하는 근로감독(특별사법경찰업무)
 - 점진적 이관: 연계성, 중복성, 집행성이 낮은 노사협력 등 관계 지원
- 근로자복지 기능의 경우 전체 이관 추진

- 점진적 이관: 연계성, 집행성, 중복성이 낮은 산업안전 재해예방 등

(표 3-42) 경남도내 지방고용노동지청 기능 정비방안

구분	정비방안			
	이관	현행 유지	우선이관	점진이관
고용정책	전체	-	○	○
노동정책	일부	○	-	○
근로자복지	전체	-	-	○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주요 기능

- 경영지원: 지원시책 조정 및 협의, 인력지원, 수출지원, 공공구매 지원
- 벤처·창업지원
- 정보·기술지원: 정보화 지원, 시험연구 지원, 기술 지원
- 사회적 약자 지원: 동반성장 지원, 소상공인·재래시장 지원
- 기업환경 조사: 불공정거래조사, 규제영향실태조사

□ 중기능

- 기업지원, 자금지원, 통상지원

(표 3-43)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기능 및 주요 사무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집행계획 수립 • 청소년 등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고양에 관한 사항 •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실험실창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원 및 신기술창업인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청소년·대학생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등 교육에 관한 사항 • 창업 동아리 및 창업 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창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창업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신기술 창업 및 창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표 3-43)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기능 및 주요 사무(계속)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의 법인 설립 및 공장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도 및 감독 • 지역 창업자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보육센터 우수 졸업·졸업예정 기업의 산업기술단지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창업보육센터,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 •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관한 사항 • 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구매지원담당자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구매 촉진대회 및 구매상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 장애인기업·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 •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 기업경영 상담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업애로 접수처리 및 상담전문기관 전문가 중개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원회 개최 및 자문위원 관리 • 지역 내 중소기업 옴부즈만 공청회 개최 •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시책 및 동향에 대한 여론수렴과 고충 민원 및 애로·건의사항의 청취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의 건의 •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수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조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 •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과 공업고등학교 간 연계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실태조사 및 사업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 산업체·인력공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지역 중소기업간 채용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표 3-43)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기능 및 주요 사무(계속)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공산품 및 공업재료의 시험·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 계량계측기의 교정에 관한 사항 • 시험방법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 시험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중소기업청 보유 장비의 이용 개방에 관한 사항 •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조사에 관한 사항 •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기술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실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학연구소 등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방지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중소기업청 연구개발 과제 및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지도 •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 양보교섭, 노사협력선언 업무 등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 •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관련 각종 간담회의 개최 및 운영 •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 중소기업의 부담금·보조금 및 세제 지원과 그 안내에 관한 사항
통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수출기업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해외시장 개척인력의 선정 및 현장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외규격 인증 획득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관한 사항

주) 주재복 외(2016)에서 인용수정.

② 경남도청 관련부서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 국제통상과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 일자리개선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창업지원, 기업환경개선, 노사협력
- 경제정책과: 경제정책, 소상공인지원
-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정비방안

- 기업지원 기능의 경우 일부 이관 추진
 - 우선적 이관: 지원시책집행계획 수립, 중소기업 인력지원
 - 점진적 이관: 분야 특이성이 존재하고, 중복성이 낮은 불공정거래 조사, 시험연구지원, 공공구매 위반사항 확인 등
- 자금지원 기능의 경우 전체 이관 추진
 - 우선적 이관: 벤처 기업 투자정보 제공
- 통상지원 기능의 경우 전체 이관 추진
 - 우선적 이관: 해외시장 개척인력, 해외규격 인증획득, 수출기업화 사업지원

(표 3-44)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능 정비방안

구분	정비방안			
	이관	현행 유지	우선이관	점진이관
기업지원	일부	-	○	○
자금지원	전체	-	○	-
통상지원	전체	-	○	-

(3) 지방유역환경청

① 낙동강유역환경청

주요 기능

- 유역관리, 국가측정망운영, 환경성 검토·협의, 국가생물자원관리

중기능

- 환경관리,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표 3-45) 지방유역환경청의 중기능 및 주요 사무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환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관리 • 환경산업체 관리 • 생태계 보전지역 보전·관리 • 특정도서 및 생태계 변화 관찰지역 모니터링 실시 • (국제적)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 및 포획·채취 허가 등 • 환경영향평가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 사후관리 •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등 • 대기 및 토양측정망 운영 • 측정 및 점검시료의 시험·분석 • 수질 및 지하수 측정망 운영 • 화학물질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 • 화학테러 등 •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 • 환경사범에 대한 사법수사 • 환경컨설팅 운영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 수질오염원 조사 등 환경기초조사연구 •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 주민지원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교육 •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사후관리 • 수변구역의 관리 • 상수원 보호구역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등 •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 승인 •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질예보제 운영 • 조류경보제 운영 •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에 관한 사항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 •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 환경지킴이 운영 •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관리 • 하천오염행위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

주) 주재복 외(2016)에서 인용수정.

② 경남도청 관련부서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환경관리, 자연보전, 자원순환
- 수질관리과: 수질정책, 수질보전, 수계관리, 상수도, 하수도

정비방안

- 환경관리 기능의 경우 전체 이관 추진
 - 우선적 이관: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및 환경산업체 관리,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 점진적 이관: 분야 특이성이 존재하는 생태계 보전지역 및 멸종 위기종 관리
-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기능의 경우 전체 이관 추진
 - 점진적 이관: 집행성과 중복성은 낮지만, 연계성은 높은 수계관리 위원회 운영,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

(표 3-46) 낙동강유역환경청 기능 정비방안

구분	정비방안			
	이관	현행 유지	우선이관	점진이관
환경관리	전체	-	○	○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전체	-	-	○

(4) 지방해양수산청

① 마산해양수산청

주요 기능

- 항만개발·운영, 선원선박, 해양환경, 해사안전

중기능

-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 해양보전

(표 3-47) 지방해양수산청의 중기능 및 주요 사무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무업무 • 선박계 업무 • 선박구조변경허가 등 • 항만국통제

(표 3-47) 지방해양수산청의 중기능 및 주요 사무(계속)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p>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기사업무, 선원공인 • 선원근로상담관 • 해사안전감독 • 항만시설(항로, 정박지)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 • 화물연대 등 사회적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업무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도선사 수급계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항만보안에 관한 사항 • 부두운영회사, 비관리청항만공사, 항만운송(관련)사업, 예선업에 관한 사항, 항만하역요금 인가, 변경인가 • 항만시설사용(국가부두) 과내서무 항만운영 • 무역항 입출항 업무 • 항만운영통계 • 항만출입증 발급 • 항만종합상황실업무(항만보안,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근무감독) • 경남 관할 국가어항 관리 • 항만공사 건설 용역업무 및 안전관련 업무 • 마산항 개발 업무 • 연안정비사업 관련 • 선박 기관업무 총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물품(유류)구매 감독관 • 항로 표지선 등대호 총괄 업무 • 항로표지시설 설치 및 개량공사 추진 • 시설항로표지 설치허가 및 관리 • 항로표지시설 관리 및 감독 • 항로표지선 운항 및 무인표지 점검 • 항로표지선 기관업무 • 등대호 갑판 점검 및 정비 • 등대호 선박 각종수당 청구 • 전마선 점검 및 정비 • 통신장비 관리운영 • 해사안전시설관리, 점검 정비 • 항로표지시설물 점검정비 • 관공선 통신운영 • 항로표지관리소 근무 • 무인표지관리원 • 항로표지시설물 점검정비
<p>해양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 해양시설신고 관리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관리 • 무인도서 관리, 선박 수리 및 계선 신고

(표 3-47) 지방해양수산청의 중기능 및 주요 사무(계속)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해양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작업 허가 • 해수욕장 관리 • 선박기관운영 • 순찰선 선체 유지관리 개항 질서 업무 • 선박 서류 작성 업무 • 청소년 해양교육, 바다의날 행사, 위험물반입신고, 개항질서 및 관공선 운영관리 •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 어업경영체 조사 등록 업무 • 마산항 순찰 및 개항단속업무

주) 주재복 외(2016)에서 인용수정.

② 경남도청 관련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 항만정책과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 어촌개발, 해양보전

○ 항만정책과: 항만정책, 신항기획, 항만운영, 항만개발

정비방안

○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 기능의 경우 일부 이관 추진

- 현행 유지: 분야특이성이 존재하는 항로표지 설치 관리

- 점진적 이관: 중복성은 낮지만, 연계성과 집행성이 높은 선박 관리

- 우선적 이관: 중복성은 낮지만, 연계성, 집행성이 높은 무역항 관리

○ 해양보전 기능의 경우 전체 이관 추진

- 우선적 이관: 중복성은 낮지만, 연계성, 집행성이 높은 공유수면 매립관리

- 점진적 이관: 연계성이 높은 선박기관 운영, 해역이용협의, 영향평가 등

(표 3-48) 마산해양수산청 기능 정비방안

구분	정비방안			
	이관	현행 유지	우선이관	점진이관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	일부	○	○	○
해양보전	전체	-	○	○

IV. 결론

1. 연구의 요약

- 중앙-지방간 기능배분의 필요성 및 기준 우선순위 도출
 -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및 상호의존적 중첩형 정부간 관계의 변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기능배분 추진
 - 경남의 중앙부처와의 기능배분을 위한 가치기준은 효율성, 지역적합성, 주민만족도, 정책효과성, 책임성, 형평성, 독자적 결정권 순으로 도출
 - 가치기준에 따른 행정기능 우선순위는 효율성 위한 기획기능, 지역적합성 지원기능, 주민만족도 위한 기획기능, 정책효과성 위한 지원기능, 지역적합성 위한 관리기능 순으로 나타남
-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 기능 그룹화
 - 1순위 그룹: 고용노동부(11), 국토교통부(1), 해양수산부(2), 기획재정부(1), 농림축산식품부(3), 보건복지부(2), 중소벤처기업부(2), 과학기술통신부(1), 산업통상자원부(1), 환경부(10)
 - 2순위 그룹: 고용노동부(4), 국토교통부(7), 기획재정부(1), 농림축산식품부(2), 문화체육관광부(2), 보건복지부(4), 중소벤처기업부(3), 산업통상자원부(1), 행정안전부(3), 환경부(7)
 - 3순위 그룹: 고용노동부(5), 국토교통부(16), 해양수산부(2), 농림축산식품부(2), 문화체육관광부(3), 보건복지부(4), 중소벤처기업부(1), 산업통상자원부(1), 환경부(2)
- 1순위 그룹 해당 기능 내 대상사무 이양방향 등 개정 필요 법률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지원법
 - (농림축산식품부) 초지법, 사료관리법, 농지법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과학기술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중소기업벤처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 경상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방안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경남도청 관련부서의 기능에 대해 중복성, 이관 적합성, 연계성, 집행성, 분야 특이성 등의 기준에 따라 이관여부 판단
 - 경상남도 소재 특행기관 중 지방고용노동지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해양수산청을 대상으로 함
 - 경남지방고용노동지청의 경우 고용정책과 근로자 복지 기능은 전부 이관, 노동정책은 근로개선 지도업무 중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의 처리 등의 특별사법경찰업무 등 분야 특이성이 존재하므로 이관이 어려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경우 자금지원과 통상지원 기능은 전부 이관, 기업지원의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 시험연구지원, 공공구매 위반사항 확인 등 분야 특이성이 존재하고 중복성이 낮으므로 점진적 이관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환경관리와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기능은 현 지적합성, 기업체편의성 등 측면에서 전체 이관 가능, 분야 특이성이 존재하는 생태계 보전지역 등 점진적 이관 필요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 해양보전 기능은 전부 이관 가능하며, 항만 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 기능은 무역항 관리의 경우 우선 이관이 가능하지만, 항로표지 설치·관리 등 전국적 통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이관이 어려움

2. 정책적 제언

- 중앙정부 차원의 기능배분 추진에 있어 일괄vs개별 이양 방식 고려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중앙-지방간 기능배분에 대해 일괄이양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각 부처별로 상이한 기능 및 여건으로 인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각 부처별 이양여건 및 특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기능별 관련 부처 및 관계자, 전문가, 국민 등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능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존 이양확정 사무 우선 배분 및 점진적 확대
 - 기존 이양확정된 사무들을 대상으로 우선 배분하고, 그 중에서도 각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기능들을 우선 배분해야 함
 - 각 부처별 기능에 관해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기능배분을 확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을 추진해야 함

- 무조건적인 기획기능 우선 배분보다는 이양효과 고려 및 선호 기능 배분 고려
 - 기획기능을 정책결정기능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이양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이양사무들의 효과들을 토대로 하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함
 - 기획기능 이양의 경우 재정 등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업무 부담으로만 이어져 지자체에서 선호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지자체와의 기능 연계 모색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중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분야 특이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관이 어렵기에 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존치해야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존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관계 부서와의 기능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함

참고문헌

- 강용기(2004), 정부간 관계(IGR)의 거버넌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
- 강영주(2017),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이제는 실천해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 Brief 16.
- 김운식(2007), 자치시대의 정부간 관계, 서울:대왕사.
- 고경훈(2017), “저출산 정책의 중앙-지방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금창호·박기관(2012),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과 과제”, 한국정책연구 12(2).
- 금창호·박용성·최승범(201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명주(2018),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사무의 실무적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김필두·한부영(2017), “고령사회 대비 중앙-지방간 노인복지기능 분담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병준(2010), “지방자치론”, 법문사.
- 대통령소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3), (제2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지방분권백서.
-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7),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2018), “중앙권한이양 제1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 박종관·이태종(2014), “행정기능 이양의 방향과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 안영훈(2006),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방안”,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이혜영(2014),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의 한계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4(2).
- 이환범·권용수·최진식(2011),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3).
- 정희동(200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조성호·윤태웅(2009),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조성호·윤준희(2012),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기능 조정방안”, 경기연구원.

조성호(2018), 특별자치단체 설치·운영방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발표자료.

주재복·강영주(2016),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근열(2016),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실태 및 발전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3).

최봉석(20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 및 사무조사 연구”, 행정자치부.

최창호·강형기(2016), 지방자치학, 삼영사.

키노시타 에이조·오오야 타카오(2012), “전략적 의사결정기법 AHP”, 청람.

한국행정학회(2018), 환경사무 이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환경사무 배분(안) 마련, 환경정책포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선도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경남도 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인	쇄	2018년 8월 27일
발	행	2018년 8월 31일
발	행	인 송 부 용
발	행	처 경 남 발 전 연 구 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우 : 51430)
248 Yongji-Ro,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51430
Tel (055)267-7447. Fax (055)266-2079
Homepage : www.gndi.re.kr
ISBN : 978-89-8351-588-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